

교수 안식연구년제에 관한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4. 3. 1.
개정 2014. 10. 20. 개정 2016.12.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.)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며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수안식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교수안식년 신청자격은 신청당시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안식년 종료 후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6년 미만 재직한 교원이 6개월 이상 국외파견 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연수를 8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교무위원은 보임기간 중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되, 교무위원을 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잔여근무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휴직중인 교원은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안식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④ 징계의결 중인 자,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제외 한다.

제3조(기간 및 제한) ① 안식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.

② 안식연구년은 우리 대학 재직 중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, 2회째 안식연구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안식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교원국외연수여행에관한규정과 교원교비국외파견에관한규정 등 제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연수 또는 파견되었던 교원은 복귀 후 6년이 경과되어야 안식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근무연수 산정) ① 최초 안식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우리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② 두 번째 안식연구년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직전 안식연구년 종료 후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

③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대상은 연수 또는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한 때부터 기산한다. 다만, 교무위원의 보임기간은 계속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기산한다.

제5조(신분보장) ① 안식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의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② 안식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정규 월급여액으로 지급한다.

③ 안식연구년 기간은 승진·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 근무연수에서는 감하지 아니하나 안식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·승급은 유보된다.

④ 안식연구년 기간 중 법인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안식연구년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. 다만, 그 잔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복무 및 의무) ① 안식연구년 교원은 허가된 안식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우리 대학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0.>

② 안식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10일 이내에 안식연구년 복귀신고서[별지 제6호]를 제출하며, 1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장과 학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연구결과개요보고서[별지 제7호]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최초 연구계획서와 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[별지 제8호]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교수업적평가제 심사규정에 의한다.

③ 국내에서 안식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은 안식연구년 기간 동안은 강의, 행정업무를 할 수 없으며, 타 대학(교) 및 기관의 전임직이나 외래강사직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2.23.>

④ 안식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식연구년 기간을 초과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처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복귀로 처리한다.

⑤ 안식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복무 및 의무규정을 이행치 않은 교원은 안식연구년 기간 중 받은 급여의 전액 또는 의무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차기 안식연구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선정절차) ① 안식연구년 희망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안식연구년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소속 학과장과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3. 1.>

1. 안식연구년 신청서 1부[별지 제1호]

2. 연구계획서 1부[별지 제2호]

3. 서약서 1부[별지 제3호]

4. 강의변경계획서 1부[별지 제4호]

5. 학과 교수회의록 1부

② 안식연구년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③ 안식연구년 교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안식연구년 부여 회수

2. 최근 3년간 교수업적실적

3. 최초임용일자

제8조(안식연구년 교원 수 제한) ① 안식연구년 교원 수는 휴직 및 국내·외 파견교원을 포함하여 우리 대학 전임교원 현원의 20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.

② 학과별 또는 전공별 전임교원수가 7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, 8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까지 안식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휴직 및 국내·외 파견 등으로 학과 또는 전공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안식연구년 교수선정을 유보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대학(교), 관할청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기관의 지원으로 국내·외 파견이 예정된 교원이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식연구년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과별 안식연구년 대상 교원보다 우선하여 파견한다.

제8조2(연구계획의 변경 및 취소) ① 연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식연구년 시행일 혹은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변경신청서[별지 제5호]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선정된 안식연구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식연구년 시행일 2개월 전에 취소신청서[별지 제 5호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